# 포 항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라				



제732호

2009. 6. 9(화)

#### 포 항 시

O 시장시지사항······	2
<b>◀</b> 고 시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주유소·판매소)의 등록요건 고시(안)(제2009-46호) ····································	6
O지적축량 기준점성과 고시(제2009-79호) ····· 1:	2

회				
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공보담당관(☎270-2234)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09. 6. 8(월) 간부회의 -

#### 포 항 시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ul> <li>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철저</li> <li>6.10일부터 실시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언론에 알리고,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li> <li>운송노조와 화주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등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바람.</li> <li>대일본 포항홍보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li> <li>일본에서의 포항홍보 행사는 성황리 개최되어 소정</li> </ul>	전 부 서 (교통행정과) 전 부 서 (일본T/F팀)
	의 성과를 거두었고 포항이 많이 알려질 것으로 보임.  - 관광객과 투자유치 전략으로 포항시가 일본에 올 인 하는 마인드를 간부들이 갖추고 전직원, 시민 들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임  -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대대적인 홍보로 일본 에 포항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기바람.	(항만정책팀)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 시승격 60년 기념행사 추진철저	전 부 서
(6. 8)	- 시승격 60년을 기념하여 자매도시 방문객 현황	(기획예산관)
	을 파악하고 접대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추진에	(자치행정과)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 시민의 날 행사에는 대대적인 대내외 홍보를 통하	
	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전적 행사를 지양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간부들이 소관업무를 잘 챙겨주기 바람.	전 부 서
	- 부서별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간부공무	
	원 들이 관심을 두고 소관업무를 잘 챙겨주기 바	
	라며,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특히, 공기단축 및 현장관리	
	추진 등 차질없는 시정추진에 노력하기 바람.	
	○ 행정행위에 선거법 저촉이 없도록 추진철저	전 부 서
	- 선거를 1년여 앞두고 행정추진 사항에 있어 절대	(자치행정과)
	선거법 저촉이 없도록 조치하고, 선거에 개입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 국비예산 확보 중앙부처 방문	전 부 서
	- 가장 중요하고 바쁜 사항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	(기획예산과)
	여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4		
'09-076	○ 행정구역통합 대비 대책마련	자치행정교
	- 중앙부처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대도시 위주의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포항이 주관이 된 통합이 되도록 선진도시 벤치마킹,	
	세미나 개최 등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b>'</b> 09-077	○ CI개발 조속추진	기획예산회
	-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조속히 개발하기 바라며 CI	
	를 보면 포항이라는 상징이 드러나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바람.	
<b>'</b> 09-078	○ 죽도시장 코레일 손님맞이 철저	경제통상고
	- 철도를 이용한 죽도시장 방문이 호평을 받고 있는	
	바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 철저한 상품관리를 위한 원산지 표시, 주차와 교	
	통 대책 마련 등 죽도시장에 대한 좋은 반응이	
	지속 되도록 하기바람.	
<b>'</b> 09-079	<ul><li>소나무 고사지역 수종갱신 추진</li></ul>	도시녹지고
	- 최근 환경적 영향과 병해충으로 소나무의 고사가	(남, 북구 <b>?</b>
	많이 발생하고 산불이 자주 발생되고 있음.	
	-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수목을 시범적으로 도	
	입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종갱신을 추진하기	
	바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b>'</b> 09-080	○ 금연사업에 솔선수범	남, 북보건소
	- 많은 예산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포스코	(건강관리과)
	가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공직자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음.	
	-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고 직	
	원 들의 자율참여를 추진하기 바람.	

## 고 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제2항에 의한 석유판매업 (주유소·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주유소·판매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09. 06. 05

포항시 고시 제2009-46호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주유소·판매소)의 등록요건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석유류 및 석유 대체연료유의 원활한 수급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신청 및 등록요건)

- ① 석유판매업(이하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라 한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주유소·판매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는 【별표 1】 과 같다.
- ④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 ⑤ 석유판매업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주유소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산림법, 가스 관련법, 소방 관련법, 환경관련법,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시장은 주유소 사업자에게 주유소의 입지여건, 대지확보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의 유휴공지에 조경, 녹지시설과 휴게시설, 편의시 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 1.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및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소)는 이 고 시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별표 1】

##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구 분	내	कु	
1. 인적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시설기준	◆ 석유판매업(주유소)	◆ 석유대체연료주유소	
	가. 지하저장시설 : 20kl 이상	가. 지하저장시설 : 20kℓ 이상	
	나. 주 유 기 : 2대 이상	나. 주 유 기 : 1대 이상	
	다.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	다.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	
	라. 위치·구조 : 소방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위치·구조 : 소방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취급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 혼합 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가스 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4. 부대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경영다각화를 위하여 주유소 대지 내에 소방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구비서류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등록신청 관계서류 나. 건물 및 시설 배치도(면적 표기)		

구 분	내 용
6. 도로 등과의 관계	<ul> <li>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폭20m이상 또는 왕복4차선 도로와 접촉하여야 한다.</li> <li>나.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 시설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는 직선거리로 50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li> <li>다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철도건널목은 제외한다.</li> </ul>
7. 주변 환경과 의 관계	<ul> <li>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제3항에 의거 설치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li> <li>1) 공동주택</li> <li>2) 의료시설 (약국 제외)</li> <li>3) 경로당</li> <li>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경계와 주유소의 담(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li> <li>1) 의료시설 대지 경계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9호 관련 건축물)</li> <li>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li> <li>3) 학교출입문(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학교로서 인가 청의 인가를 득한 학교)</li> <li>4)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의 외벽(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하거나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li> </ul>

[별표 2]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소)

구 분	내	क्	
1. 인적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 용제판매소	◆ 석유대체연료판매소	
2. 시설기준	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기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2 제2호부터 제5호의 저장소) 또는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3 제2호및 제4호의 취급소)		
3.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해 당 없 음	
4. 구비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규정한 등록신청 관계 서류	

#### 【별표 3】

제732호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구 분	내 용
1. 위 치	<ul> <li>주유소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 내에 상시 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li> <li>장애인 및 노약자의 출입과 사용이 용이하도록 건축물 1층에 설치한다.</li> </ul>
2. 설치기준	<ul> <li>○ 형 태 : 출입문은 외부에서 남여 구분 설치하고,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거 수세식으로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은 수거 식으로 설치 가능)</li> <li>○ 면 적 : 20.0㎡ 이상</li> <li>○ 대변기 : 남자 1개, 여자 2개 이상</li> <li>○ 소변기 : 2개 이상</li> <li>○ 세면기 : 남·여별 각 1개 이상</li> <li>○ 거 울 : 남·여 화장실별 각 1개 이상</li> <li>○ 환풍기 : 남·여 화장실별 각 1개 이상</li> <li>ㆍ 주유소의 사업자는 화장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및 노후 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li> <li>나. 주유소의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지, 수건, 비누 등을 상시 비치하고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li> <li>다. 주유소의 사업자는 이용객이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국・영문으로 표기한 안내 표지판과 출입문에 남·여 구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li> </ul>
3. 기 타	석유판매업(주유소)과 동일 장소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을 하는 경우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고시

#### 포항북구 고시 제2009 - 79호

지적측량 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6. 08.

### 포항시 북구청장

초라기조자 머쉬 미 비슨	평면직각종횡선수치		ш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X(m)	Y(m)	비고
보조삼각점14	306603.42	233762.67	
보조삼각점15	304420.15	234723.12	
보조삼각점16	303518.38	234396.56	
보조삼각점17	302472.53	234760.84	
보조삼각점18	303256.22	232581.13	
보조삼각점19	302949.36	232038.63	
보조삼각점20	303158.70	230920.21	
보조삼각점21	304809.89	228725.81	
보조삼각점22	305064.68	228543.11	
보조삼각점23	305317.71	228513.47	
보조삼각점24	298714.75	227312.82	
보조삼각점25	299006.58	228721.98	
보조삼각점26	299279.35	229279.22	
보조삼각점27	299076.47	230401.51	
보조삼각점28	296344.27	235875.34	
보조삼각점29	294941.21	236038.13	
보조삼각점30	293688.88	235698.19	
보조삼각점31	292226.46	236064.97	
삼각보조점32	291720.72	236732.54	
보조삼각점33	291052.82	236387.60	
보조삼각점34	289951.16	236097.58	
보조삼각점35	290574.24	238031.02	
보조삼각점36	287343.00	236745.48	
보조삼각점37	287177.12	237008.47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н ¬
	X(m)	Y(m)	비 고
보조삼각점38	287151.11	236788.38	
도근점2873	283718.63	233953.81	
도근점2874	283800.63	233951.38	
도근점2875	283875.28	233954.46	
도근점2876	283964.68	233976.33	
도근점2877	284061.33	234000.15	
도근점2878	284225.98	234063.28	
도근점2879	284341.44	234117.53	
도근점2880	284433.98	234159.48	
도근점2881	284715.26	234374.39	
도근점2882	284813.53	234459.22	
도근점2883	284898.29	234544.72	
도근점2884	284952.22	234632.94	
도근점2885	284964.24	234732.16	
도근점2886	284940.91	234822.55	
도근점2887	284854.55	234865.61	
도근점2888	284823.58	234923.30	
도근점2889	284772.62	235032.20	
도근점2890	284781.82	235128.82	
도근점2891	284816.42	235245.28	
도근점2892	284833.85	235363.18	
도근점2893	284825.47	235442.14	
도근점2894	284818.00	235557.12	
도근점2895	284845.08	235663.96	
도근점2896	284921.12	235757.21	
도근점2897	285008.18	235833.47	
도근점2898	285084.86	235887.09	
도근점2899	285190.32	235952.42	
도근점2900	285284.92	235976.37	
도근점2901	285463.17	236039.28	
도근점2902	285565.69	236127.27	
도근점2903	285693.93	236422.63	
도근점2904	285796.25	236463.24	
도근점2905	285830.22	236572.79	

2009. 6. 9(화)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	평면직각종횡선수치		ш ¬
	X(m)	Y(m)	비고
도근점2906	285836.90	236664.89	
도근점2907	285900.12	236776.34	
도근점2908	295925.92	236908.16	
도근점2910	285546.80	235700.64	
도근점2911	285512.46	235552.59	
도근점2912	285474.21	235402.45	
도근점2913	285437.49	235265.92	
도근점2914	285417.26	235195.51	
도근점2915	285371.78	235076.08	
도근점2916	285300.16	234999.68	
도근점2917	285232.31	234938.40	
도근점2918	285220.63	234833.01	
도근점2919	285218.00	234737.31	
도근점2920	285147.28	234655.76	
도근점2921	285065.15	234571.37	
도근점2922	284909.89	234464.50	
도근점2923	284795.37	234361.26	
도근점2924	284627.69	234211.05	
도근점2925	284554.66	234238.74	
도근점2926	283575.65	234078.84	
소 재 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외 일원		
고 제 시	포항시북구 항구동일원(2873~2926)		
설치연월일	2009년 4 월26일		
	2009년 4 월15일		
측량성과보관장소	포항시 북구청 건축지적과 지적담당		